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 나.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5-2 외 5필지
- 다. 사업량 : 부지면적 1,284.5㎡, 연면적 1,250㎡
- 라. 사업시행자 : 창원시(마산회원구청장)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토지(용지)목록 참조
- 다. 출입기간 : 2020. 10. 15. ~ 사업종료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및 물건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5-15번지 등 5필지(조서별첨)
※ 토지 등 세부내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10. 15. ~ 2020. 10. 29.(14일간)
-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회원구청 행정과
(전화 : 055-230-4045)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협의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라. 감정평가사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행정과 (☎055-230-40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